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3,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fair1110@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금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제3항)

징계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안 제3조제2항)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1/2 감액 단, 질서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미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 (안 제3조제3항)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1/2 감액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10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생략)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신 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

<신 설>

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
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
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
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